

7월4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P001893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-5	2,481	260	260	10.48	10.48	제1종근린생활시설	1/	보전녹지지역	20.07.23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	2020650000P001892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-5	2,481	260	260	10.48	1,048	제1종근린생활시설	1/	보전녹지지역	20.07.23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	2020650000P002017	설계변경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 13	42,412	1,727.3	4,738.78	4.07	7.87	관광휴게시설	3/1	보전관리지역	20.07.23	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4	2020650000P001911	기타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911	32,803	7,716.8885	74,205.4418	23.52	168.92	공동주택	12/1	제2종일반주거지역	20.07.23		재심의	상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적합한 색채계획 바랍니다. 주조색(현 S1002Y)의 색채 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정 계획 바랍니다. 고채도는 최대한으로 지양하는 계획 바랍니다.(최고 채도는 7.5이하로 계획)
5	2020650000P001910	기타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암이동 2318	36,350	7,832.0945	71,491.99	21.55	146.34	공동주택	12/1	제2종일반주거지역	20.07.23		재심의	상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적합한 색채계획 바랍니다. 주조색(현 S1002Y)의 색채 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정 계획 바랍니다. 고채도는 최대한으로 지양하는 계획 바랍니다.(최고 채도는 7.5이하로 계획)

6	2020650 0000P00 1988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 성리 477	678	52.5	52.5	7.7434	7.7434	단독주택	1/	제1종일반 주거지역	20.07.2 3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 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 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7	2020650 0000P00 1945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산 100-13	23,593	1,349. 26	1,905.4 9	5.72	3.68	창고시설	1/1	생산관리 지역	20.07.2 3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경 관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 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 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8	2020650 0000P00 2034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 흥리 767-2	5,465	640.4 4	916.59	11.72	8.73	창고시설	1/1	보전녹지 지역	20.07.2 3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 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